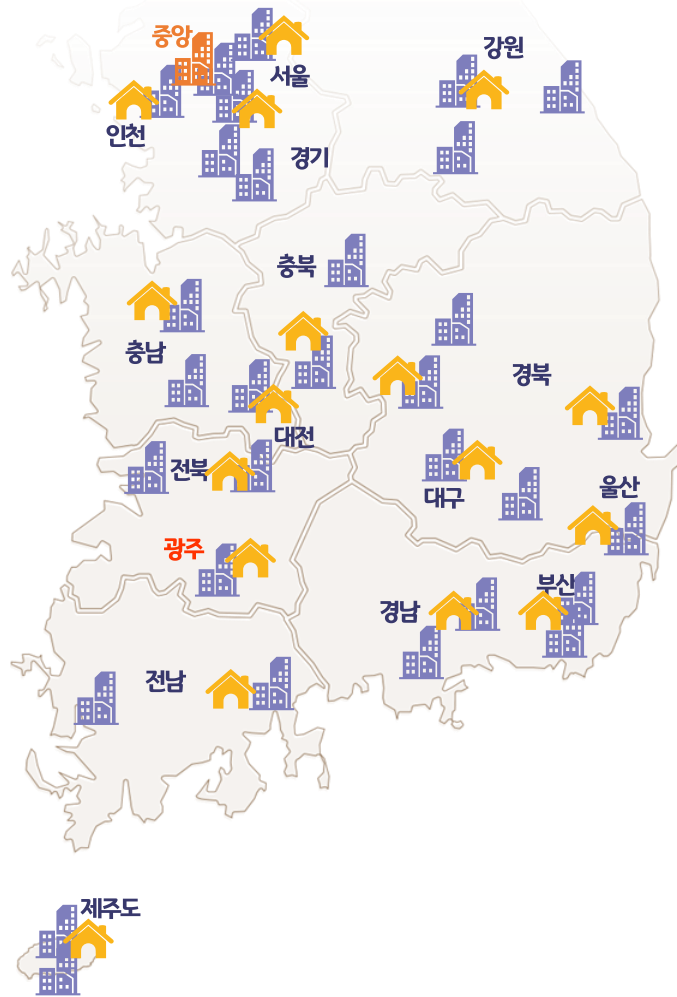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모두가 행복한 세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1
중앙노인
보호전문기관

34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18
학대피해노인
전용센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치	부천시 부일로 501 양촌빌딩 4층
연락처	1577 - 1389 032-683-1389
팩스	032-683-1388

1.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2. 노인돌봄, 사회적 책임의 시대
3. 노인학대 개념 이해
4. 노인학대 현황 및 유형
5. 노인학대 유형별 사례
6. 노인학대 신고 및 행정처분
7.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1.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경기서부(6개시)

부천, 광명, 안양,
시흥, 군포, 김포

경기북부(10개시)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동부(9개시)

성남, 용인, 이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의왕,
과천

경기도(6개시)

수원, 화성, 안산
평택, 오산, 안성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쉼터 생활 지원

입소기간
4개월(최장 6개월)



재발방지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심신안정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사회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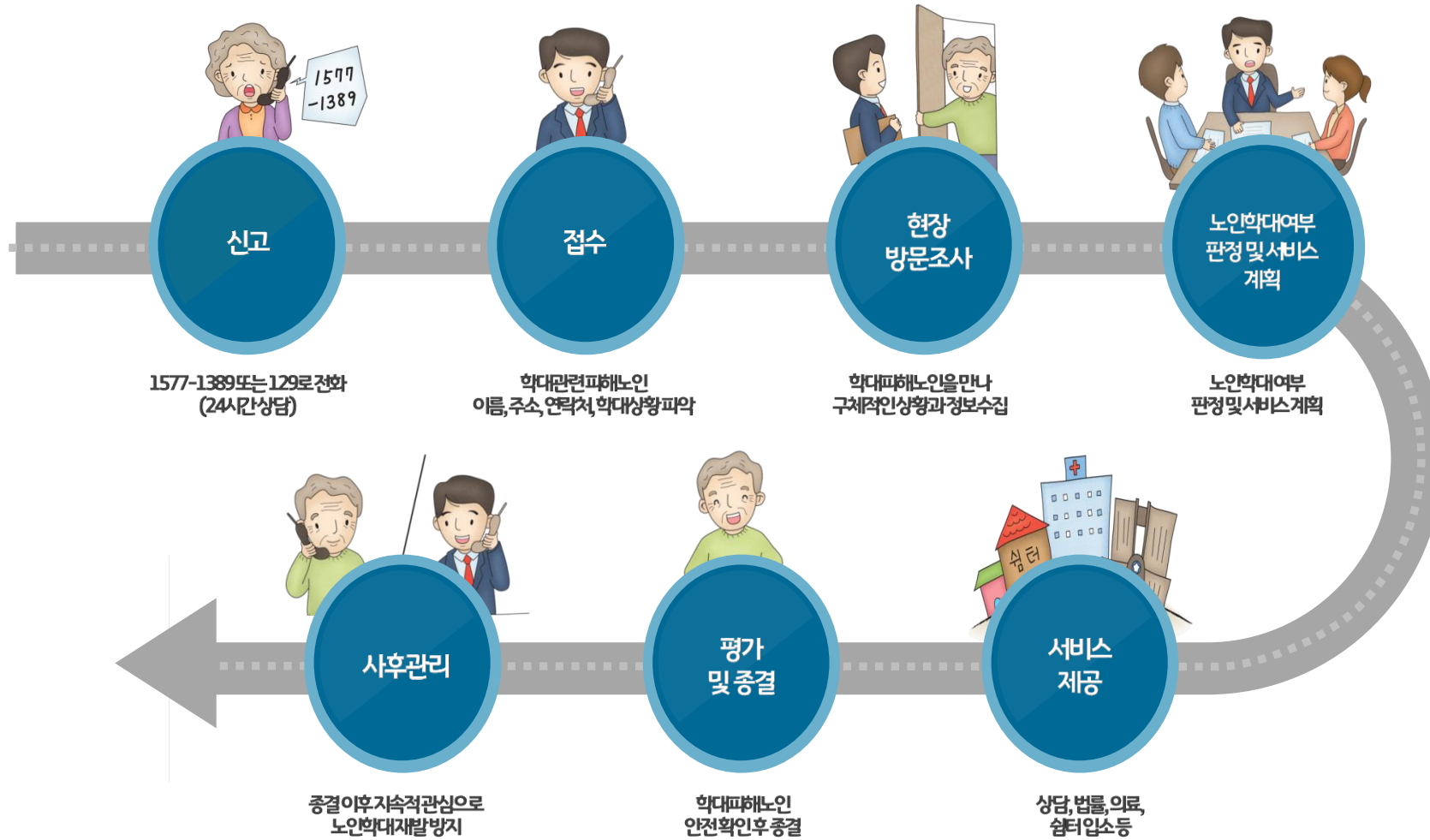
법률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지원

의료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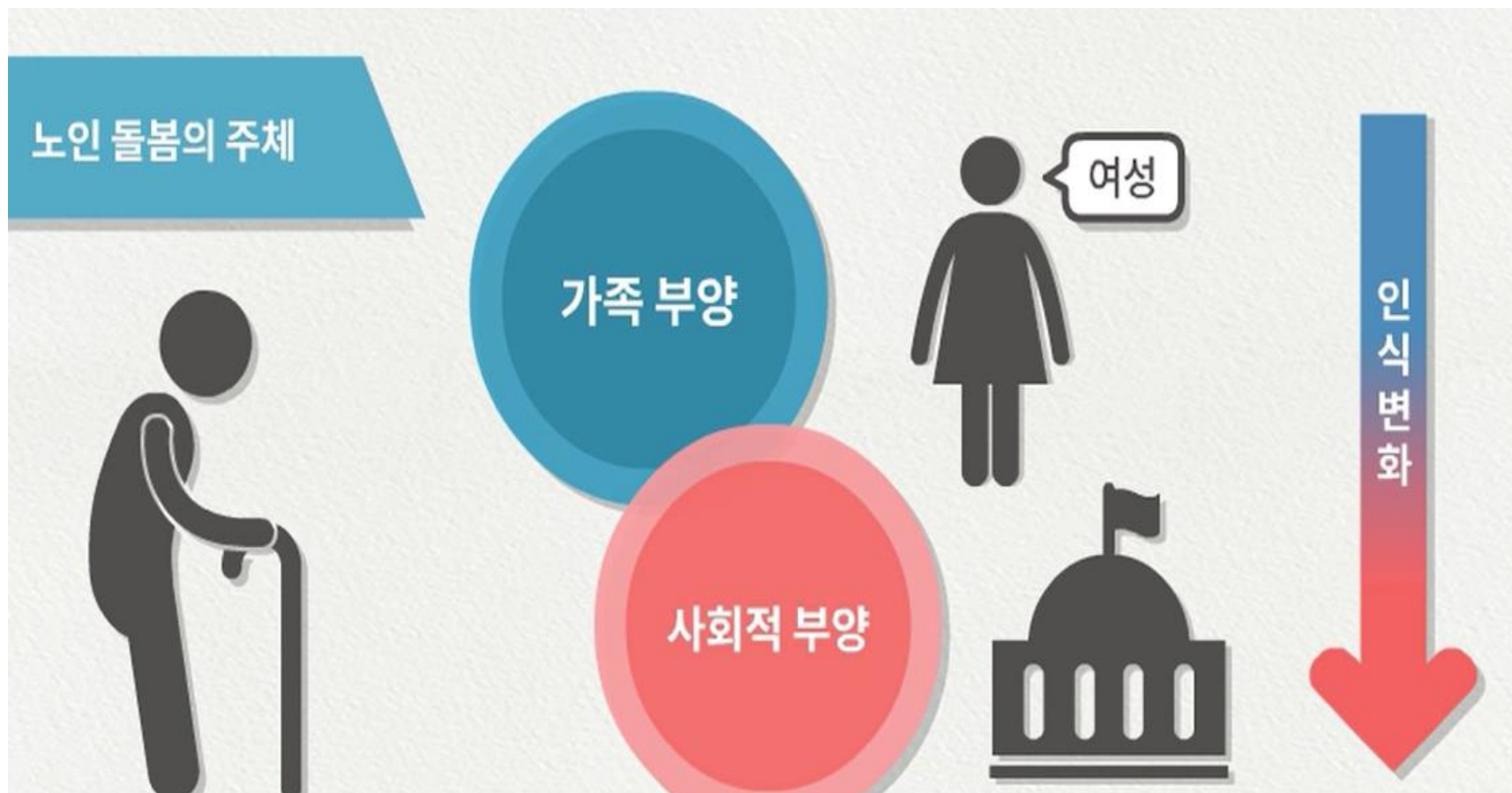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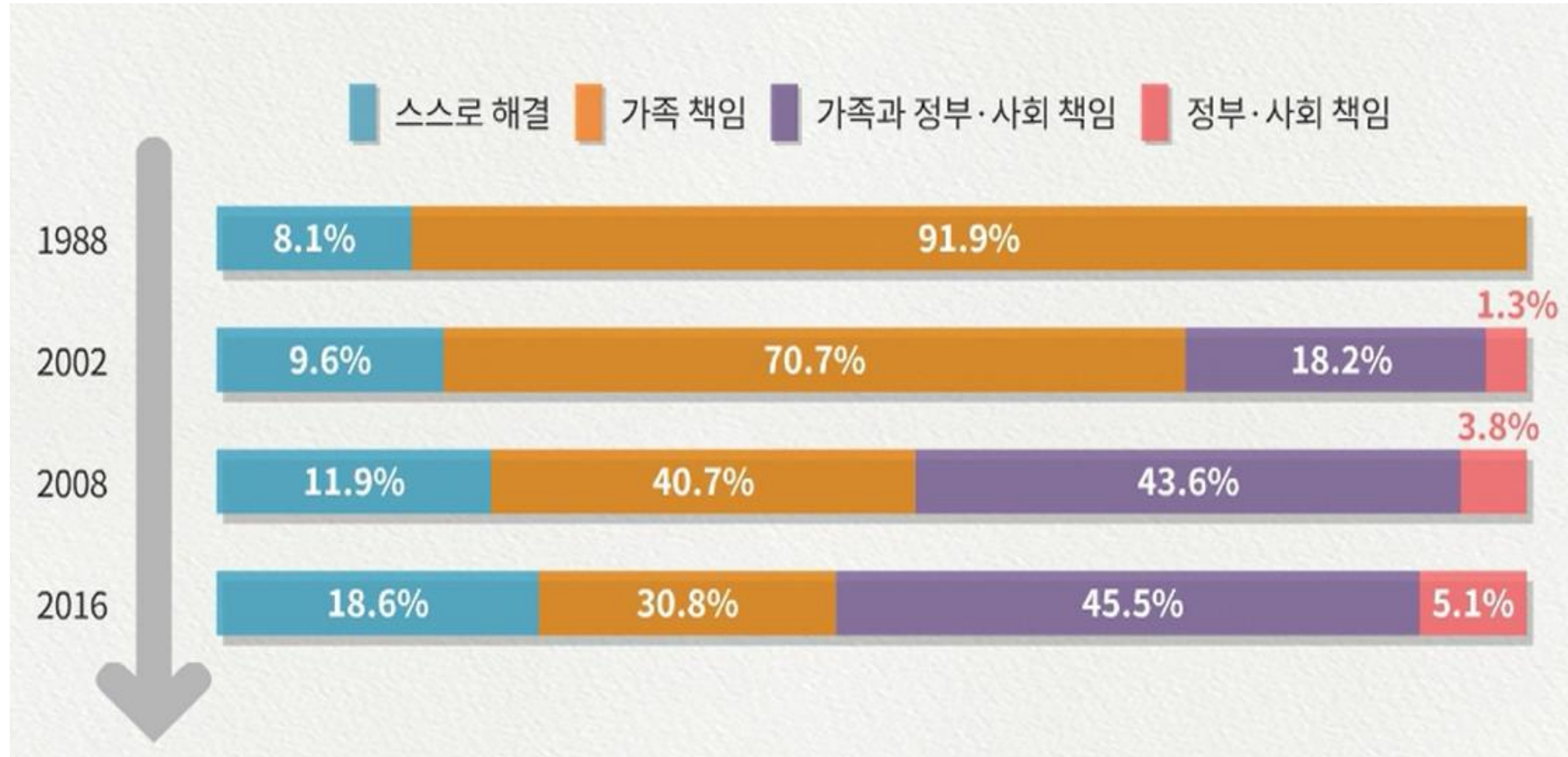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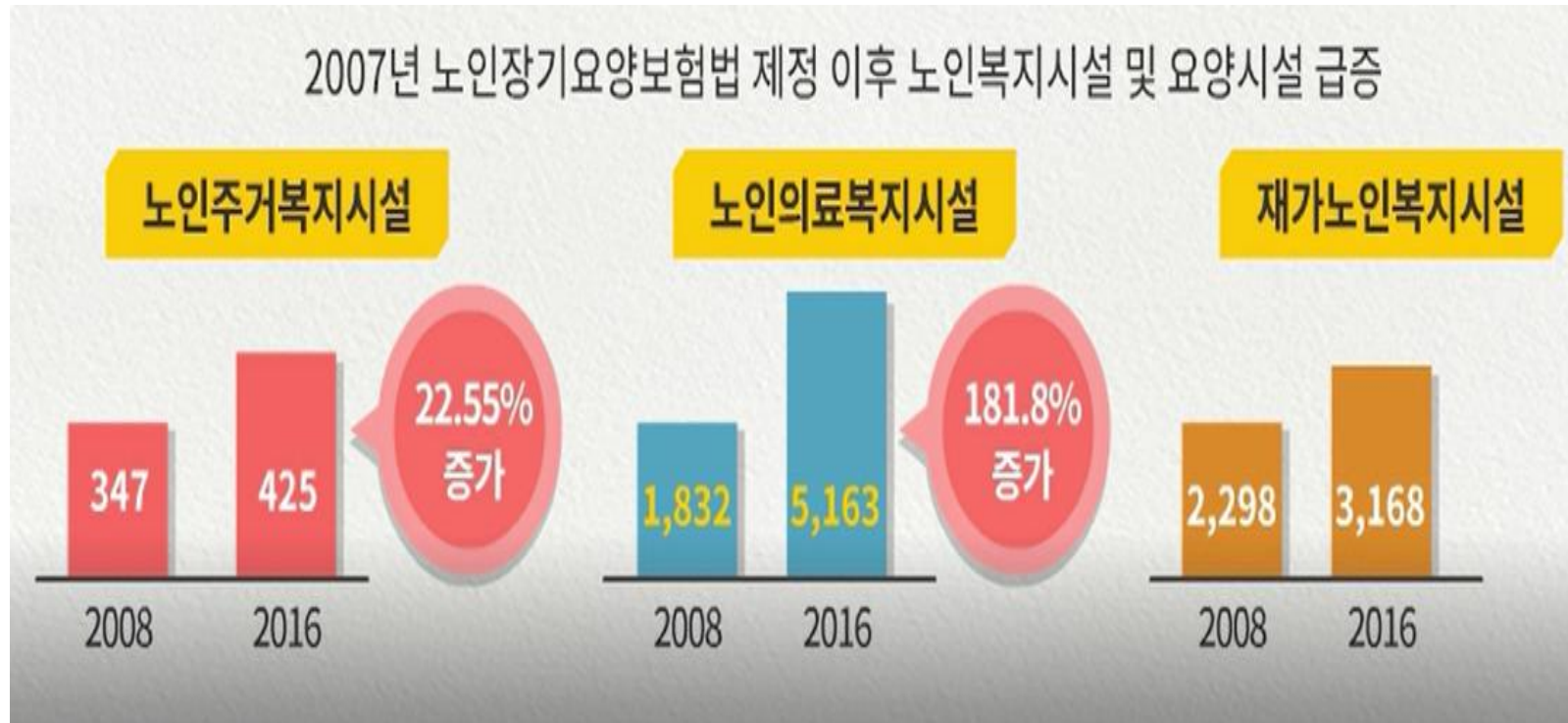
2. 노인돌봄, 사회적 책임의 시대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노인돌봄 제공 기관에서 노인과 돌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노인돌봄 제공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 발생**도 점점 증가



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인간답고 아름다운 노후를
영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함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인생의 마지막 단계’

‘노인돌봄’은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스스로 쓸모 없는 존재라는 느낌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보살핌

노인의 품위와 존엄을 끝까지 지켜주는 돌봄을 제공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삼중의무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

3. 노인학대 개념 이해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1. 신체적 학대
2. 언어·정서적 학대
3. 성적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
6. 자기 방임
7. 유기



- 보호자 :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제2호
 -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 부양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1호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함.
- 노인학대관련 범죄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해당되는 죄

● 학대행위자 정의

- 노인복지법 제 39조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를 통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복지법 제39조 9(금지행위)

1. 노인이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이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4. 노인학대 현황 및 유형

전국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된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현황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체적 학대	1,591	2,132	2,651	3,046	3,138
	25.9	31.3	36.4	37.3	38.1
정서적 학대	2,330	2,730	3,064	3,508	3,465
	37.9	40.1	42.0	42.9	42.1
성적 학대	102	91	150	228	218
	1.7	1.3	2.1	2.8	2.6
경제적 학대	542	491	411	381	426
	8.8	7.2	5.6	4.7	5.2
방임	919	778	649	718	741
	14.9	11.4	8.9	8.8	9.0
자기방임	622	523	291	240	200
	10.1	7.7	4.0	2.9	2.4
유기	48	66	71	55	41
	0.8	1.0	1.0	0.7	0.5
계	6,154	6,811	7,287	8,176	8,229
	100	100	100	100	100

출처: 201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본인	622	522	290	240	200
	14.7	11.3	5.7	4.2	3.5
배우자	652	952	1,263	1,557	1,749
	15.4	20.5	24.8	27.5	30.3
아들	1,523	1,729	1,913	2,106	1,803
	36.1	37.3	37.5	37.2	31.2
며느리	183	157	131	143	109
	4.3	3.4	2.6	2.5	1.9
딸	451	475	424	436	438
	10.7	10.2	8.3	7.7	7.6
사위	21	23	27	34	27
	0.5	0.5	0.5	0.6	0.5
손자녀	64	103	124	134	112
	1.5	2.2	2.4	2.4	1.9
친척	46	63	49	59	50
	1.1	1.4	1.0	1.0	0.9

출처: 201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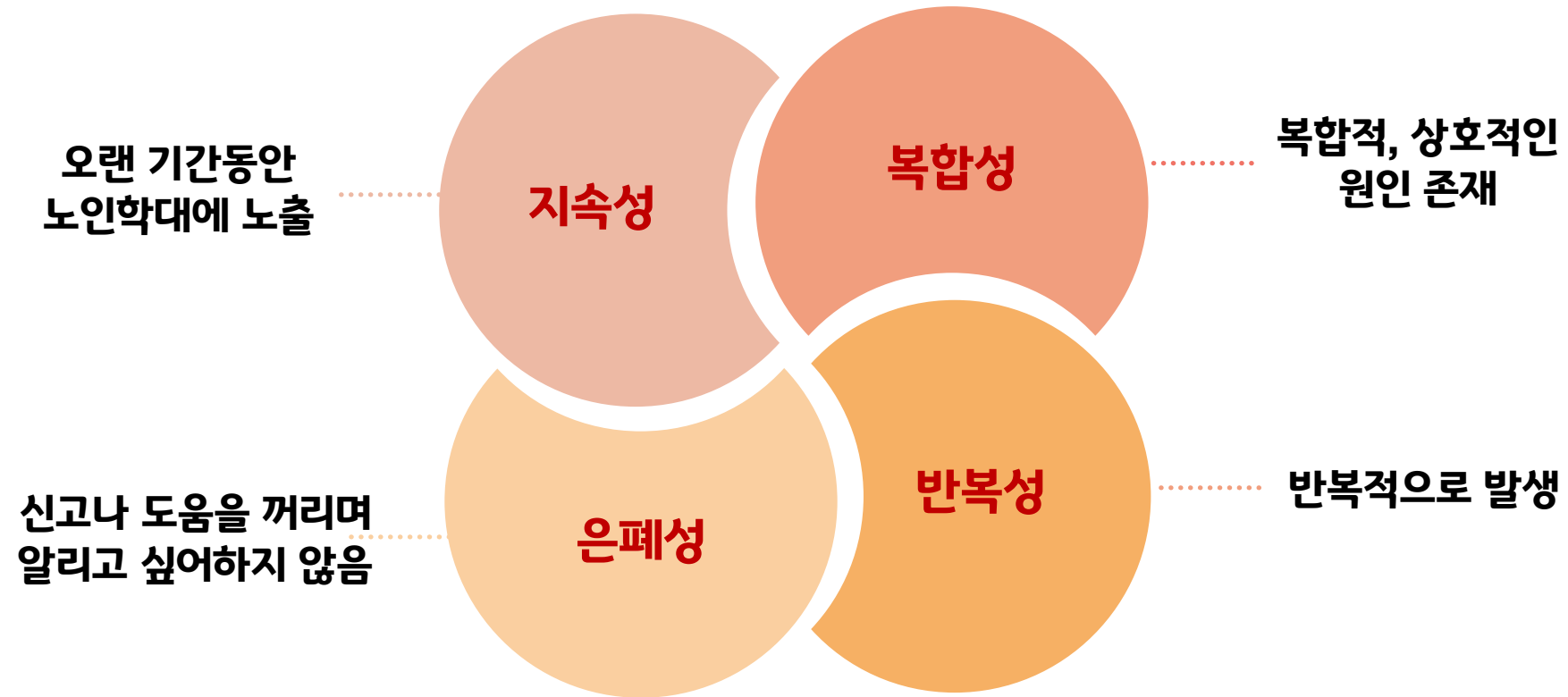
노인학대 발생공간

(단위: 건,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내	3,276	3,799	4,129	4,616	4,450
	85.8	88.8	89.3	89.0	84.9
생활시설	206 ^{주1)}	238 ^{주1)}	327 ^{주1)}	380 ^{주1)}	486 ^{주1)}
	5.4	5.6	7.1	7.3	9.3
이용시설	57	16	16	41	131
	1.5	0.4	0.3	0.8	2.5
병원	88	24	27	65	45
	2.3	0.6	0.6	1.3	0.9
공공장소	80	94	58	42	60
	2.1	2.2	1.3	0.8	1.1
기타	111	109	65	44	71
	2.9	2.5	1.4	0.8	1.4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주 1)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를 가정 내 학대에 포함한 수치임(2015년~2019년)

출처: 201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5. 노인학대 유형별 사례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행위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가두거나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한다.
증상	설명할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처 (찢린 상처, 출혈, 골절 등) 신체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신체적 학대 사례

양손에 글러브 형태의 신체 억제대 후 테이프를 사용하여 이중 구속을 함.
(글러브 고정장치 위 테이프 결박)

종사자의 임의 판단으로 신체억제대 사용

야간에 외부로 나갈 수 없게 끔 밖에서 잠금장치 설치

입소 2개월 후 사망, 입소 당시 보호자가 고혈압, 전립선, 당뇨
치매 예방약 복용하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건강관리 소홀히 관리함.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되는 억제대가 노인학대에 해당되나요?

- ✓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을 경우
- ✓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에만!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신체보호대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 ✓ 어르신의 심신의 상태
- ✓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 ✓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자세히
기록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신체적 제한에 대한 통지

/

‘동의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함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정서적 학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대유형)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행위

- 존대하지 않고 반말을 한다.
-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
-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다.
(물이나 약을 달라,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밥을 더 달라 등)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피한다. 눈을 맞추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정서적 학대

사례 1.	직원의 욕설, 반말 섞인 말투, 불친절한 태도(어린아이처럼 대함)
사례 2.	요양보호사에게 놀림을 당한다 (어르신 똥똥하다, 대변을 많이 싸다 등)
사례 3.	피해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육박 지른다.(혼나볼래!, 정말 버릇이 없는 할망구일세!)
사례 4.	때리는 시늉을 한다. 주먹을 들이대며 위협한다. 인상을 쓰며 말한다.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행위

-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 부위가 보이게 기저귀를 교체 한다.
-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 놓고 목욕대기를 하게 한다.
- 신체와 성적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목욕을 시킨다.
-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 입힌다.
-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
(음란하고 상스러운 성적 농담을 던진다)
- 목욕, 기저귀 교체 등에 대해 동성자의 케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는다.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서비스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

- ✓ 목욕 서비스와 같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 최대한 편안한 환경 조성
- ✓ 기저귀를 갈 때는 커튼, 이동식 스크린, 수건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함
- ✓ 실금, 실변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중요함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행위	입소, 퇴소 시 부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한다. 서비스 이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노인의 통장을 자녀가 관리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한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증상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정적 거래가 있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 학대행위자는 노인과 함께 거주 또는 유대관계가 깊은 경향이 있음
- ▶ 노인은 통장 내역, 수급생계비와 같은 재정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방임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위

- 학대사례를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의 돌봄을 소홀히 한다.
- 스스로 수분 섭취가 어려운 노인의 돌봄을 소홀히 한다.
- 질환에 따른 식사(당뇨식, 저염식, 유동식 등)를 먹이지 않는다.
- 음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식판을 치운다.
- 화장실 이용을 제한시킨다.
- 기저귀에 용변을 본 상태로 장시간 내버려 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 입히기, 기저귀 교환, 손톱 깎기, 목욕 등)
-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위

-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한다.
(냉,난방 공급 부족 / 감염,전염 등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 방치)
- 기본 물품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의 질환 및 의료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욕창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
-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하거나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행위

- 식사거부 등의 행위로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노인을 방치한다.
-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을 거부하여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거부하는 노인을 방치한다.
-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행위	-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 길거리에 내다버린다. - 소풍, 쇼핑 등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놔두고 온다. -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찾지 않는다. - 노인을 타 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증상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들이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왕래를 하지 않음.

가족의 방문만 기다리는 어르신의 자녀 들이 시설의 연락조차 거부하는 경우

- ✓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 동료 어르신과의 교류와 소집단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6. 노인학대 신고 및 행정처분

■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신속히 근무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신고한다.
-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필요한 경우, 학대사례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증언 등 노인학대 문제해결에 협조한다.
-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

A solid green circle with a slight drop shadow.

권리침해

A solid blue circle with a slight drop shadow.

권리박탈

- 약자를 위한 인권과 권리가 확보되어야 함.
- 학대피해노인은 인권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킬 누군가가 필요함

상대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나의 인권도 보장되는 사회 !

학대피해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

=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업무과정 중 시설 내 노인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음

업무과정 중 시설 내 노인학대 행위자가 될 수 있음



노인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노인 관련업무)
-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19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 교육 실시.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적극 참여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노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에 따라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학대행위자 및 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

노인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55조의2 (벌칙))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성폭력 등 유기·방임·구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4호)	

학대행위자 및 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55조의4)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제39조의 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5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행정처분의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신체적 학대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성적 학대	지정취소		
방임 학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경제적 학대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정서적 학대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노인복지법 60조(양벌규정)

노인복지법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종업원 등이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요양원 등의 시설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을 두고 있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내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다면?
내 부모님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한다면?
또는 내가 노인이 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케어를 받고 싶으십니까?

0 존엄케어가 필요한 이유

- **헌법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존엄케어 4무 2탈

1. 존엄케어 : 노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케어

-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첫 걸음.
- 한 인간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운동
- 남아있는 잔존능력을 유지, 향상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것.

4무 2탈 실천방법

- 4무 : 냄새, 낙상, 욕창, 신체억제
- 2탈 : 기저귀, 침대(와상)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1. 냄새가 없어요. (신속청결, 주기적인 환기)

원인	- 기저귀 사용에 따른 대소변의 냄새 - 욕창이나 상처로 인한 냄새 - 음식으로 인한 냄새 - 몸에서 나는 냄새와 입 냄새 - 환기부족, 기저귀 처리 미숙으로 인한 냄새, 병실 청결 미 관리 - 환기가 안되는 구조, 병실 내 화장실 위치, 냉장고의 음식물 관리 문제
실천 방안	1. 개인의 위생관리 2. 환기 문제 해결 3. 공기 청정제나 냄새 제거하는 제품 사용 4. 침실의 청결유지 및 쓰레기통 점검, 냉장고 관리 5. 화장실의 주기적인 청소 및 냄새 원인 제거 6. 기저귀나 오염물의 청결 처리, 7. 침식의 분리

출처:이노솔루션_존엄케어를 위한 첫걸음.

2. 낙상이 없어요.

- 낙상발생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
- 노인들의 균형감각과 근육의 힘을 키우기 위한 운동 및 예방 프로그램 병행
- 낙상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3. 욕창이 없어요.

-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 피부가 습하지 않고 청결한 상태 유지
- 혈액순환을 위한 규칙적인 마사지, 시간별 체위변경
- 욕창예방 물품 사용 등을 통한 방지 노력 필요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4. 신체 억제가 없어요.

- 돌봄을 제공하는 중, 낙상이나 상해 예방, 처치 등을 대처하기 위해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 탈 기저귀(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행위)

- 균형 잡힌 영양관리
- 지속적인 근력 강화 훈련 및 재활 보행연습, 앉아 있는 훈련 등을 선행
-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직접 배변활동을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 탈 침대(침대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 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
- 근력운동을 통해 일어설 수 있도록 유도
- 취침 공간과 식사공간을 구분
- 매일 외부로 나갈 기회를 마련하는 노력 필요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시설입소노인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입소노인 윤리강령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운영자와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2.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년1회 이상 정기적
으로 실시한다.
4.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 종사자는 노인들간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7.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8.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9.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10.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학대 예방 공익캠페인 : 나비새김



학대로 인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노인의 현실을
반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 모양으로 형상화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돕고자 하는
모두의 마음을 이어서 희망 날개를 다시 펴는 것을 의미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어르신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 제소리를 낼 때 우리 모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온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